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8. 12. 31.>

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[ ] 신고서 / [ ]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**즉시**

송달받을 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	
송달장소 신고(변경신고) 세목	전체 세목[ ]	개별 세목[ ] ( )	
신고내용	송달장소 신고	송달받을 장소	
		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	
	송달장소 변경신고	변경 전 송달받을 장소	
		변경 후 송달받을 장소	
		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	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류 송달장소를 신고(변경신고)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 임 장

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"위임받은 자"에게 서류 송달장소 [ ]신고 [ ]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(송달받을 자) (서명 또는 인)
위임받은 자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위임자와의 관계	
	주소			전화번호		

첨부서류	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기존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난에 해당 사안을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